

# 금품청산합의서

1. “甲” 근로자

성명		주민번호	
근무부서		직책	

2. “乙” 사용자

사업장 명		대표자 성명	
사업자등록번호		연락처	

1. “甲”과 “乙”은 아래 공사기간의 종료에 따른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한다.

금품청산 대상기간 / (20 년 월 일) ~ (20 년 월 일)

2. 이에 “乙”은 “甲”에게 위 사항에 관한 퇴직금을 포함한 주휴수당, 연장수당, 야간수당, 기타수당 등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금품으로 총 일금 \_\_\_\_\_ 원을 “甲”의 계좌로 지급한다. 일체의 금품을 지급함과 동시에 당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.

3. “甲”과 “乙”은 함께 본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행정상(노동청고소·진정, 4대보험신고, 부당해고구제신청, 국세청신고등), 민사상,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확약하고 기타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어떠한 청구나 권리주장도 포기함을 확약한다.(부제소합의)

4. “甲”과 “乙” 당사자는 동 합의의 내용에 대해 사업관계자 및 직원들에게 누설치 않고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위반할시 일체의 민사/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.

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본 서 2통을 작성하고,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각 1통씩 보유한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“甲”근로자: \_\_\_\_\_ (인)

“乙”사용자: \_\_\_\_\_ (인)